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03
----------	-----

2024. 1. 30.(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이양섭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4년 1월 15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1월 16일
라. 상정일자 : 제41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4년 1월 24일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양섭 의원)

가. 제안이유

- 내실있고 실효성있는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하여 빅데이터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4조)
○ 빅데이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7조 및 안 제8조)
○ 빅데이터 위원회의 구성(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

- 가. (필요성) 이 조례안은 기본계획과 추진계획 수립으로 빅데이터
관련 시책 마련의 근거를 강화하고, 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함

- 나. (타당성) 빅데이터위원회가 공공데이터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여 2개 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원회 구성인원 등을 확대한 것은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내용이 적절하고 타당성이 있음
- 다. (법적합성) 상위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의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 라. 다만,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추진계획의 조속한 수립, 위원회 위원의 추가 위촉, 위원회 개최 등 데이터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민”을 “충청북도민”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데이터”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제4조의 제목 “(기본계획 수립)”을 “(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5년”을 “3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은 충청북도 빅데이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도민”을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데이터산업 추진계획”을 “추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충청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제9조제1항 중 “11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빅데이터”를 “데이터 관련”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과학인재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데이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제2항제1호 중 “사업추진계획”을 “추진계획”으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빅데이터의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u><신 설></u></p> <p>1. 2. (생략)</p> <p>제4조(<u>기본계획 수립</u>)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의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u>5년</u>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1조(목적) ----- ----- ----- <u>충청북도</u> <u>민</u>----- -----.</p> <p>제2조(정의) ----- -----.</p> <p>1. “데이터”란 「<u>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u>」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p> <p>2.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p> <p>제4조(<u>기본계획 수립 등</u>) ① ----- ----- ----- ----- <u>3년</u>-----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④ <u>기본계획과 추진계획은 충청북도 빅데이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u></p>

현행	개정안
<p>제5조(빅데이터의 활용) ① (생략)</p> <p>② 도지사는 <u>도민의 편익 증진</u>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통 등의 각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하려는 때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p> <p>제7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충청북도 빅데이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한다.</p> <p>1. 기본계획 및 <u>데이터산업 추진 계획</u>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p> <p>2. ~ 4. (생략)</p> <p><u><신설></u></p> <p>5. (생략)</p> <p>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u>11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p>	<p>제5조(빅데이터의 활용)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u>----- ----- ----- -----.</p> <p>제7조(위원회 설치) ----- ----- ----- ----- ----- <u>둔다.</u></p> <p>제8조(위원회 기능) ----- ----- -----.</p> <p>1. ----- <u>추진계획</u>----- -----</p> <p>2. ~ 4. (현행과 같음)</p> <p>5. 「<u>충청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u>」 제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u>사항</u></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제9조(위원회 구성) ① ----- ----- <u>15명</u> ----- -----.</p> <p>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p>

현행	개정안
<p><u>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공무원과 도의원의 총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며,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u></p> <p>1. <u>도 소속 공무원</u></p> <p>2. <u>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u></p> <p>3. <u>전문가, 교수 등 빅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p> <p>4. <u>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p> <p>③ <u>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u></p> <p>④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u></p>	<p><u>選)한다.</u></p> <p>③ <u>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u></p> <p>1. <u>과학인재국장</u></p> <p>2. <u>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u></p> <p>가. <u>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u></p> <p>나. <u>데이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p> <p>다. <u>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p> <p>④ ----- ----- <u>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u>----- -----</p>

현행	개정안
<p>은 기간으로 한다.</p> <p>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u>빅데이터</u>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p> <p>제12조(빅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생략)</p> <p>② 빅데이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기본계획 및 <u>사업추진계획</u>의 수립·시행 지원</p> <p>2. ~ 9. (생략)</p> <p>③·④ (생략)</p> <p><u>제15조(시행규칙)</u>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u>제16조(존속기한)</u> 제9조에 따른 위원회는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간 존속한다.</p>	<p>-----.</p> <p>⑤ -----</p> <p>-----</p> <p><u>데이터 관련</u> -----</p> <p>-.</p> <p>제12조(빅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1. ----- <u>추진계획</u>-----</p> <p>-----</p> <p>2. ~ 9.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삭제></p> <p><삭제></p>

관련법령 발췌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범위에서 데이터의 국내외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시장중심의 의사형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산업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정부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데이터의 생성, 수집, 관리,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반영한다.

1.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
2. 데이터의 생산 및 보호에 관한 사항
3. 데이터 거래 촉진에 관한 사항
4. 데이터의 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데이터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데이터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7. 데이터산업 관련 창업 및 성장 지원 등 데이터사업자 및 데이터 전문 기업의 육성과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
8. 데이터산업 관련 국제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9.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운영되는 데이터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데이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시행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데이터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제6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의 데이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비용발생 요인

-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3. 관련조문

- 조례안 제5조(빅데이터의 활용)
- 조례안 제6조(데이터산업 육성)
- 조례안 제13조(예산의 지원)

4.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재정수반요인 :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소요예산
- 추 계 기 간 :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나. 추계결과

- 추 계 결 과 : 168억 원
 -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 지원 9개 사업 : 168억 원
(국 95, 도 73, 시군 0, 기타 0.3)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도비, 기타(자부담)

5. 연도별 비용추계표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7,715,208	7,081,236	681,236	681,236	681,236	16,840,152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사업	4,500,000	4,500,000	0	0	0	9,000,000
	충북 인공지능산업 컨트롤타워 기반구축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700,000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 지원	180,000	180,000	180,000	180,000	180,000	900,000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1,800,000	1,800,000	0	0	0	3,600,000
	반려동물 증개의학 활용 정밀의료 플랫폼 구축	633,972	0	0	0	0	633,972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45,000	45,000	45,000	45,000	45,000	225,000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100,000	100,000	0	0	0	200,000
	빅데이터 허브플랫폼 운영	166,236	166,236	166,236	166,236	166,236	831,180
	도정 주요 현안 정책 지원 빅데이터 분석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재원 조달		7,715,208	7,081,236	681,236	681,236	681,236	16,840,152
의존 재원	소 계	5,000,000	4,500,000	0	0	0	9,500,000
	보조금	5,000,000	4,500,000	0	0	0	9,500,000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2,681,236	2,581,236	681,236	681,236	681,236	7,306,180
	지방세	2,681,236	2,581,236	681,236	681,236	681,236	7,306,180
	세외수입	-	-	-	-	-	-
시군비		-	-	-	-	-	-
기타(자부담)		33,972	0	0	0	0	33,972